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9일, 박주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주민의원)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사회적 의도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개정 경과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만을 폐지할 경우 형법

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
경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
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